##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·신장식·전종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93

발의연월일: 2024. 7. 12.

발 의 자: 민형배·신장식·전종덕

정혜경 • 민병덕 • 윤종오

김종민·조 국·이기헌

조계원 · 김선민 · 서왕진

박은정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

OECD 가입국 중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. 전 세계, 이른바 괜찮은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없는 현상입니다. 야만적입니다. 2019년 ILO(국제노동기구)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5조에 대해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 판단합니다.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 정치적 자유의 과도한 제한을 지적합니다.

외국의 경우 공무원이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활동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.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입니다.

이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.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.

### 주요내용

- 가.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제한함(안 제57조제1항·제4항 삭제 및 제3항).
- 나.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(안 제58조 삭제).

법률 제 호

##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제59조까지"를 "제57조까지, 제59조"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중 "제57조 및 제58조"를 "제57조"로 한다.

제57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선거에서"를 "선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항과 제2항"을 "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58조를 삭제한다.

제83조 중 "제42조·제43조 또는 제58조"를 "제42조 또는 제43조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적용범위) ① 특수경력직공	제3조(적용범위) ①		
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			
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			
으면 제31조, 제41조제1항, 제4			
2조부터 제46조까지, 제46조의			
2, 제46조의3, 제47조부터 제51			
조까지, 제51조의2, 제52조부터			
<u>제59조까지</u> , 제61조, 제74조부	제57조까지, 제59조		
터 제79조까지, 제82조 및 제83			
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			
다.			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	2		
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 및			
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,		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			
직공무원에 대하여는 <u>제57조</u>	제57조		
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			
다.			
③·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
제57조(정치운동의 금지) ① 공무	제57조(정치운동의 금지) <u>&lt;삭</u>		
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	제>		
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			
<u>할 수 없다.</u>			

- ② 공무원은 <u>선거에서</u>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~ 5. (생략)
-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 지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8조(집단행위의 금지)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원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.
  -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 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.
  -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

(2) <u>선거에서 그 지위들</u>
이용하여
<u>.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③
<u>제2항</u>
<u>&lt;</u> 삭 제>

<삭 제>

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(專任)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 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83조(벌칙) <u>제42조·제43조 또</u> 전 는 제58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세83조(벌칙)	제42조	또는	제43조
			<b>.</b>